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과 장 박용주 서기관 여인홍	042-481-5087
	2016년 5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24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영업비밀 유출과 전쟁 중

- 미·일·유럽 등, 영업비밀 보호 제도 대폭 강화 -

금년 1월 일본이 영업비밀 법령을 개정·시행하였고,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영업비밀 지침을, 그리고 지난 5월 11일에는 미국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 제도 강화를 위해 선진강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Defend Trade Secrets Act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명명된 미국의 새 연방법은, 개별 주(州)마다 상이했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연방관할 선택 시 전국에 걸친 소장의 신청, 출국금지명령 신청, 외국의 피의자 소환 등이 가능하여 주법원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 가능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침해물 압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도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국내 유출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변경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고 개인 3만 엔, 기업 10억 엔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또한,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부정하게 접근·취득하거나 영업비밀 탈취·유출이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대상 행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지난 4월 14일 영업비밀의 정의, 불법행위의 범위,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켜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역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와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 간 경쟁심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국가 간 활발한 인력 이동으로 인해 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술 유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1666-0521)

□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신설

* 상원('16.4.4) 및 하원('16.4.27) 통과, 오바마 대통령 서명('16.5.11)

- 기존에는 주(州) 법에 따라 주 법원에 소송 제기만 가능했으나 연방법 추가로 연방법원에 직접 소제기도 가능하게 됨
 - *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특허, 상표 등 다른 지재권과 달리,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개별 주(州)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져왔음
- 영업비밀 보유자 일방의(ex parte) 신청에 의한 침해물 압수명령(civil seizure)을 허용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 확대
 - * 일방적 압수명령 :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심리하여 압수명령을 발부하는 강제집행 제도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인 경우 손해액의 두 배까지 배상책임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중 영업비밀보호 관련 규정 개정

* 2015. 7. 3. 공포, 2016. 1. 1 시행

- 영업비밀 침해죄 벌금형 한도 인상 및 해외유출 가중 처벌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국내유출	해외유출
개인	1000만 엔	2000만 엔	3000만 엔
기업	3억 엔	5억 엔	10억 엔

- 부정취득 시도(attempt), 국외에서 일어난 부정취득,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의 유통 등 처벌대상 행위 확대
- 최초 및 2차 부정취득만 처벌하던 것을 3차 이후 취득자도 처벌
- 영업비밀 침해를 통해 얻은 부정 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경제적 억지력 강화
 - * 기존에도 형법에 따라 몰수 추징이 가능했으나 몰수의 대상이 물건에 한정되어 있는 등 절차의 활용도가 낮았음

□ 유럽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 채택

* 2016. 4. 14.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통과

- 28개 EU 회원국 간 영업비밀의 대상, 보호 방법 및 보호 수준 등이 상이하여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회원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통된 규정 마련
-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도입하여 보호 대상 명확화
- EU 회원국의 사법 당국은 영업비밀 소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침해 의혹 행위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유통·판매 금지 등 예방 및 잠정 조치 시행
- 배상 청구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불법 취득·사용·유출의 결과로서 발생한 실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적절한(appropriate) 손해배상 의무화
 - * 악의적이지 않은(without intent) 취득, 사용,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한도 지정 가능